

2024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1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운전	운전서기보(9급)	1명	정년 적용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인천광역시)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운전	운전분야	운전서기보(9급)	○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행정업무 지원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4.11.26.) 기준]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현재 유효한 자격증으로 국내자격증에 한함 ※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인 자(예정인 자 포함)는 응시 불가
------	---

다. 우대요건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24.11.11.) 기준]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운전분야 경력자(경력에 따른 차등 우대) ○ 자동차 정비·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등급에 따른 차등 우대) ○ 교통사고 유무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건당 차등 감점)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붙임3" 참고
------	--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4.11.11.)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우대요건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 관련분야 경력자(경력에 따른 차등 우대)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수행한 운전업무 경력
 - ※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운행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운전을 부수적 업무로 수행한 경우 불인정)
 - (예시) A기관 6개월, B기관 7개월 근무했을 경우 1년 1개월 근무경력 인정

-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동일기간 내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
- ※ 군 의무복무(운전병) 중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경력인정 기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재직)증명서에 ①업체명, ②근무기간(년, 월, 일 표시), ③직위(직급), ④담당업무, ⑤운행차종(차량종류 및 승차인원 등), ⑥근무형태, ⑦주당 근무시간, ⑧발급 확인자(성명, 연락처), ⑨발급일자**가 명시(①~⑨ 모두 명시)된 경우 인정되고, 경력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임용예정직무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필요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추가서류 제출 가능
- **외국어로 된 서류나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한글 번역본 미제출 시 해당 경력 불인정**)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하고, 주40시간 초과 시 주40시간으로 간주함
-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력인 경우 불인정**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 (보완 서류: 4종 모두 제출) ① 관련 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 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지8호, 경력증명서]를 사용하여 제출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등급에 따른 차등 우대)**

- ※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舊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 복수의 자격증 소지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교통사고 유무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건당 차등 감점)**

-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운전경력증서에 한하며, 운전면허경력, 교통사고 경력,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 (미제출,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경우 또는 모든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④ 윤리·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 또는 '미흡'으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 또는 '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은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11.1.(금) ~ 11.11.(월)	'24.11.5.(화) ~ 11.11.(월)	'24.11.19.(화) (예정)	'24.11.26.(화) (예정)	'24.12.11.(수) (예정)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mss.go.kr/site/incheon/main.do), 나라일터(gojobs.go.kr)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11. 5.(화) ~ 11. 11.(월)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응시원서는 “붙임3”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함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 방문접수는 평일(09:00~18:00) 한하며,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채용담당자 앞
- 문의전화 : 지역정책과 채용담당자(032-450-1124)
 - ※ 공고 마감 후 3일 내에 “원서접수 완료 및 응시번호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응시자께서는 유선 연락주시기 바라며, 문자 미확인(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제출서류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서식 1】
	응시원서 1부(수입인지 부착)	【별지서식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7】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운전경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통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8】
	4대보험 중 1종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부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 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 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 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12. 12. ~ 12. 18.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5.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032-450-1124)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점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운전	관용차량 운전	운전서기보(9급)	1명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차량 운행 ○ 관용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 등 ○ 행정업무 지원 등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문제해결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관련 법규 및 도로체계에 관한 지식 ○ 차량운행 및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 ○ 행정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기초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응시요건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면허에 한하며,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분야(운전)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 이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 소속되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운행업무 근무경력(운전을 부수적으로 수행한 경우 불인정) → (예시) A기관 6개월, B기관 7개월 근무했을 경우 1년 1개월 근무경력 인정 *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동일기간 내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 * 군 의무복무(운전병) 중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관련분야 자격증(등급별 차등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舊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복수의 자격증 소지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이력(건수별 차등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운전경력증서에 한하며, 운전면허경력, 교통사고 경력,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의 경우 횡수와 관계없이 최대감점 처리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①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서식 1】
- ②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2】
 - 응시수수료 : 5,000원 금액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를 부착하여 제출
 -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됨
 - ※ 응시수수료 면제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확인서
 -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임이 확인되어야 함)

-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3】
-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4】
-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5】
-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
- ⑦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7】
- ⑧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⑨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발급
 -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 미제출,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경우 또는 모든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⑩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에 한함,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⑪ (해당자에 한함)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8】

⑫ (해당자에 한함) 4대보험 중 1종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부

※ 경력이 있는 해당자만 ⑪번 서류와 함께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中 택1

※ 경력(재직)증명서, 보험 가입기간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경우 추가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 경력증명서는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의 ①업체명, ②근무기간(연·월·일), ③직위(직급), ④담당업무, ⑤운행차종(차량종류 및 승차인원), ⑥근무형태, ⑦주당 근무시간, ⑧발급 확인자, ⑨발급일자를 정확히 기재하고, 담당업무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하여야 함
2. 발급 확인자 및 확인 가능한 연락처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3.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4.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담당업무 미기재 등) 및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발행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및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5. 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 발행기관의 자체양식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단, 문서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⑬ (해당자에 한함)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사용금지)
-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응시요건 자격증(운전면허증) 및 직무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별지서식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명	임용예정기관	채용직급(분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운전서기보(9급)

■ 제출서류(총괄표)

번호	제출서류명	제출여부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필수
2	응시원서 1부(수입인지 부착)		필수
3	이력서 1부		필수
4	자기소개서 1부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필수
8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 1부		필수
9	운전경력증명서 1부(전체기간으로 조회, 공고일 이후 발행) ※ 미제출 조화기간이 전제 아닌 경우 및 공고일 이전 발행분은 서류전형에서 해당항목 0점 처리		필수
10	주민등록초본 1통(남성에 한함,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1통 추가 제출		필수
11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상세한 경력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지서식 8을 작성하여 제출		해당자에 한함
12	4대보험 중 1종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13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 작성(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란에 "O", "X" 표시

※ 위 번호 순서대로 클립이나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_____ (서명 또는 인)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변경금지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우체국에서 5천원 금액의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부착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출력물을 응시원서 뒤에 첨부 (정부수입인지가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도 발급 가능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변경금지

③ 응시요건자격증 :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④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이후 관련된 경력을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예시) A기관 6개월, B기관 7개월 근무했을 경우 1년 1개월 근무경력 인정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할 것

- 차량종류, 승차정원,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예시) 승합대형 현대유니버스(45인승), 고속버스운행 등

-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동일기간 내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

- 군 의무복무(운전병) 중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아니하오니 해당자의 경우 군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근무형태는 '전임' 또는 '비전임'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비전임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20시간/40시간 * 4년)

【사고 및 위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이력을 '전체'기준으로 표기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발급하여 확인 후 기재

※ 미제출,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경우 또는 모든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자격증】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자기소개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운전)
----	-----------	-----------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한글(hwp) 기준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색은 검정색

줄간격 160%로 작성할 것

○ 자필로 작성 가능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 서류작성 시 위의 작성요령은 삭제하고 작성할 것

2024. . .

작성 자 :

(인/서명)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9급)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한글(hwp) 기준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색은 검정색
줄간격 160%로 작성할 것

○ 자필로 작성 가능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 예정업무와 연계하여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서류작성 시 위의 작성요령은 삭제하고 작성할 것

2024. . .

작성 자 :

(인/서명)

【별지서식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과 임용 절차가 불가함)

성명		응시분야 (직무등급)	운전서기보(9급)
생년월일			

본인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일반직공무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경력·자격·면허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등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지서식 9】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공무원 채용시험 봄” 포스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직문화와 공무원 채용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 바로 **공무원 채용시험 봄** 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구분	원서제출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공개경쟁 채용시험	5급공채(행정)	1. 25. ~ 29.	3. 2.	6. 28. ~ 7. 3.	10. 29. ~ 31.	11. 15.
	5급공채(기술)					
	외교관후보자 선발			6. 28 ~ 7. 3.	11. 1.	
	7급공채	5. 16. ~ 20.	7. 27.	10. 12.	-	12. 4. ~ 7.
	9급공채	1. 18. ~ 22.	3. 23.		5. 28. ~ 6. 2.	6. 21.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1. 30. ~ 2. 2.	3. 2.		4월 중	5. 9. ~ 10.	5. 24.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7. 22. ~ 26.	8. 31.		10월 말	11. 26. ~ 28.	12. 20.
민간경력자 5·7급 일괄채용시험	6. 3. ~ 11.	7. 27.		9월 중	11. 6. ~ 13.	12. 30.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3. 26. ~ 4. 1.	-		4월 말	6. 20. ~ 21.	8. 14.

사이버국가포털(gosi.kr)에 들어오셔서
2024년도 시험일정 사전 알림 신청 을 선택하시면
원서제출기간 및 시험기일 1주일 전에 SMS 문자로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예정직렬 및 선발인원, 응시자격요건, 시험과목, 시험방식
등의 자세한 시험정보는 사이버국가포털(gosi.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2040 청년(청후) 세대가
대한민국 정부, 공직문화, 공무원 채용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장구이자
등기부여가 되는 희망찬 이야기를 전해
드리기 위한 **공직소통 채널** 입니다.



참고 2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씨도 소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인사혁신처

1. 임신·출산 환경 지원

[휴직]

- 질병휴직**
 - 임신중독증 등 임신 관련 질환 및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중 임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복직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태아유지 시도가 가능하므로, 필요 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전]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여성공무원이 임신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 휴직을 하게 된 경우,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출근 일수가 있는 육아휴직 중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임신 시, 인사혁신처의 복직신청을 하여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 [임신 전] 난임치료시술휴가**
 - 여성공무원은 인공수정 시술 시 총 2일, 체외수정 시술 시 총 3~4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남성공무원의 정자 채취일 당일 하루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후] 임신결전휴가

-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결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임신결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결전휴가는 분별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최초 신청 시 임신결전 시 등 임신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임신·출산 환경 지원

[휴가]

- [임신 후]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가요?
A.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하루 보호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하며, 출근을 전후로 하는 데는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전·후] 출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다태아의 경우 120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제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다태아 임신 시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기간 배치는 의료기관 진단서상 출산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신 후]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 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병원에서 폐쇄 환에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인사관리]

- 임신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허용**
 -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 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허용됩니다.
- 임신 공무원 장기·장기간 출장 제한**
 - 기관장은 임신 공무원의 장기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공무원 일 및 휴일 근무명령 금지**
 - 기관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야근(오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휴일(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해당 공무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야근 및 휴일 근무명령이 가능합니다.

2. 임신·출산 물적 지원

[맞춤형 복지]

- 난임 시술비 지원**
 - 난임 시술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복지점수 500점(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모자보건법상 난임부부 시술비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한해 1회 지원합니다.
- 태아·산모 검진비 지원**
 - 임산·출산 시 검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점수 총 200점(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저차 출산 축하금 지급**
 -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2000점(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3,000점(300만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합니다.
 -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 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지원 사업]

- 공무원 연금대출**
 -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이거나, 시혼부부 공무원 등은 사회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대출에는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3종이 있으며 사회정책적대출은 대출 대비 %o 낮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공무원 임대주택**
 -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시혼부부에게는 가점이 부여되며, 입주 중에 임신·출산할 경우 입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출산·출산비용 지원사업**
 - 임신·출산 공무원에게 자녀당 5만원 상당의 출산·육아비용을 지원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 온라인몰에서 용품을 선구매 구매 가능합니다.

3. 육아 환경 지원

[휴직]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가요?
A. 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에 미달(9세가 되기 이전)이거나 또는 과보호 위험 조정을 받은 아동(연간 18시간 이상)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평균 연간 20시간 이내로 휴직을 하며, 1개월당 최대 30시간 사용 가능하며, 기간 종료 후에는 공휴일·연휴로 육아휴직 사용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반영됩니다.

[가족돌봄휴직]

-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가]

- 육아시간**
 - 만 5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육아시간 24개월 상한선식은 ①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월간평균 2시간(근로시간 기준)의 비율로 24개월 상한선을 넘지 않고, ②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간평균 24개월로 초과됩니다.

[가족돌봄휴가]

- 아린이 휴직 휴일,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 육아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허용**
 -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2명 이상 혹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 전일제 공무원은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근무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전일제 공무원으로 회복됩니다.

4. 육아 물적 지원

[각종 수당]

- 가족수당**
 - 자녀 양육 시, 셋째는 3만원, 둘째는 2만원, 셋째 이하 자녀는 11만원의 가족수당이 매달 지급됩니다.
 - 왕족으로 자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 다만,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

-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평균액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당 1년입니다.

[재외공무원 자녀돌봄보조수당]

- 재외근무직에게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자녀 돌봄보조수당이 지급됩니다.

[맞춤형 복지]

- 가족점수 부여**
 - 자녀 양육 시, 셋째 50점(5만원), 둘째 100점(10만원), 셋째 이후 자녀 200점(20만원)의 맞춤형 복지점수가 매달 부여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지원 사업]

- 공무원 연금대출**
 - 미취학자녀 육아, 3자녀 이상 양육,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등은 사회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취학자녀 및 3자녀 이상 양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23년 기준으로, 미취학자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의미하고, 3자녀 이상 양육은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공무원 임대주택**
 -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2명 이상 혹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시, 미성년 자녀 양육 가점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5.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

- 이용대상: 만 0세에서 만 5세 취학 전의 각 정부청사 입주부처에 근무 하는 공무원 및 계약직
- 이용시간: 평일 07:30 - 19:30, 토요일 07:30 - 15:30

청사	어린이집명	위치	문의
광명	세종시 일광로점 68동 정부청사입주부처	044-262-1676	http://www.sejongkids.com
	세종시 갈매로 388동 정부청사입주부처	044-866-2017	http://www.sejongkids.com
	세종시 도룡로 19 동 정부청사입주부처	044-866-2017	http://www.sejongkids.com
대전	세종시 도룡로 19 동 정부청사입주부처	044-866-2017	http://www.sejongkids.com
	세종시 도룡로 19 동 정부청사입주부처	044-866-2017	http://www.sejongkids.com
충청	세종시 도룡로 19 동 정부청사입주부처	044-866-2017	http://www.sejongkids.com
	세종시 도룡로 19 동 정부청사입주부처	044-866-2017	http://www.sejongkids.com
경남	세종시 도룡로 19 동 정부청사입주부처	044-866-2017	http://www.sejongkids.com
	세종시 도룡로 19 동 정부청사입주부처	044-866-2017	http://www.sejongkids.com
제주	세종시 도룡로 19 동 정부청사입주부처	044-866-2017	http://www.sejongkids.com
	세종시 도룡로 19 동 정부청사입주부처	044-866-2017	http://www.sejongkids.com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 통합 사이트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순서 관리 등 종합 정보 제공



정부대전청사 직장 어린이집 사이트



* 관련 정보는 인사혁신처(<https://www.mpm.go.kr>) 페이지(새소식-간행물-"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